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12.10.5>

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 · 확인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일

자본재등 도입자	① 상호 또는 명칭(영문):	② 사업자등록번호 (전화번호) :
	③ 신고된 사업명 :	
	④ 외국인투자 신고일: 년 월 일	
	⑤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: 원 (USD 상당), %	
자본재 등을 공급하려는 자	⑥ 상호 또는 명칭(영문) :	
	⑦ 국적 :	

자본재등 도입물품명세	⑧ HSK 분류번호	⑨ 품명	⑩ 수량	⑪ 규격	⑫ 제작자	⑬ 금액 (기준통화 · 도입통화)

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(또는 대리인) (전화 :)

하나은행장 귀하

신청인 귀하

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하나은행장 (인)

첨부서류	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

⑬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.

1. 출자받은 자금으로 자본재 도입 시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5제4항에 따라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(기준통화)로 표기합니다. 다만, 실제 도입통화가 기준통화와 다른 경우 도입통화도 표기하며, 환율은 검토확인신청일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.
2. 출자목적물로서의 자본재 도입 시: 자본재 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표기합니다.